##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308

발의연월일: 2022. 7. 5.

발 의 자 : 아수진(비) · 김성환 · 강득구

박홍근 · 김승원 · 신정훈

김의겸 · 양경숙 · 강민정

홍기원 · 윤건영 · 강병원

김경만 • 천준호 • 최기상

이장섭 • 윤준병 • 송옥주

전용기 · 이동주 · 고민정

노웅래 · 임종성 · 이정문

오영환 · 김주영 · 이학영

임호선 · 송재호 · 유기홍

한병도 • 박주민 • 우워식

최인호 • 이탄희 • 김회재

기동민 · 최혜영 · 박영순

김정호 · 조정식 · 한정애

유정주 • 위성곤 • 정성호

조응천 · 진성준 · 정일영

진선미 · 홍정민 · 박찬대

주철현 의원(5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비과세 식사대의 한도를 월 1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과세 한도 기준인 10만 원의 경우, 식사 또는 식사대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2003년에 개정된 19년 전 기준으로 현재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6월의 외식물가지수는 110.67로 19년 전인 2003년 5월 65.69에 비해 1.68배상승했음.

국제 공급망 위기 악화로 원자재 가격 등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외식물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소득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월 2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식사 또는 식사대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 또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여 2022년분 식사대에 대해서도 적용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러목 및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식사대로서 월 2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러목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제12조(비과세소득)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	
세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	3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소득	
가. ~ 더. (생 략)	가. ~ 더. (현행과 같음)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사 또는 식사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
	<u>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u>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
	<u>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u>
	<u>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식</u>
	사대로서 월 20만 원 이상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u>정하는 금액</u>
머. ~ 저. (생 략)	머. ~ 저. (현행과 같음)
4.・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